

# 상호협력 의향서

## (Memorandum of Understanding)

주식회사 스펠릭스와 서울교육대학교(이하 '양 기관'이라 한다)는 양 기관 간 스펠릭스 Watson 제품 및 서비스 관련 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다.

**제1조 (목적)** 본 상호협력 의향서 ("의향서")에 기술된 전략적 제휴에 대한 상호협력 의사를 명문화한다.

### 제2조 (기본 원칙)

1. 양 기관은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상호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.
2. 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.
3. 양 기관은 본 의향서의 유효기간 중 전략적 제휴의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, 이를 반영한 최종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당사자들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.

**제3조 (전략적 제휴 계획)** 양 기관은 다음의 전략적 제휴 계획 및 일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.

1. Watson 관련 인공지능 커리큘럼 개발 및 검수
2. 인공지능(AI)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관련 교재 개발 및 검수
3. 학기/방학 인턴십 등 산학 협력
4.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는 제반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

**제4조 (비밀유지)** 본 의향서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**제5조 (유효기간)** 본 의향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기간은 서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
**제6조 (변경 및 해지)**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이 해지된다.

1. 양 기관이 의향서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
3. 단,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**제7조 (법적효력)** 본 의향서는 제4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제외하고 양 기관에 대한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.

**제8조 (기타)** 본 의향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본 의향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본 의향서 각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하고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0년 05월 14일

주식회사 스펙릭스

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9길 10 1601호 (문래동6가, 문래sk V1)

대표이사 : 유 영 보 (인)



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

주 소 :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96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

원 장 : 김 도 남 (인)

